학부운영위원회규정 3-1-23

규정번호 3-1-23
제정일자 2013.9.23
최근개정 2024.7.24
개정차수 6차 개정
관리부서 교무입학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부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학부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각 학부별로 구성하며, 소속 학부장·학과장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학부장으로 한다.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업무를 총괄한다.(개정 2024.7.24.)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(개정 2024.7.24.)

제3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회의)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

제5조(개회 및 의결정족수) 위원회는 위원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(2017.07.14.)

1. 교원 및 조교 인사에 관한 사항
2. 호 삭제(2019.07.30.)
3. 학부·학과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
4. 교육용 기자재(비품) 선정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(개정 2015.2.16)
5. 학부·학과 발전계획, 특성화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
6. 기타 학부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(개정 2024.7.24.)

제7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.

제8조(간사) 위원회의 업무는 각 호별 담당 부서에서 관장하며,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해당 행정팀장으로 한다.(개정 2017.07.14., 2018.08.27.)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2조제2항·제3항, 제6조제6호)